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8004 |
| 의 뢰 인 | 강선우 의원 |
| 회 답 일 | 2025. 2. 19. |
| 추계번호 | 25C0726 |

#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

## 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,888억 4,400만원(연평균 1,577억 6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8조) | 70 | - | - | - | - | 70 | 14 |
|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11조) | - | 300 | - | - | 300 | 600 | 120 |
| 진단검사비 지원(안 제14조) | 4,235 | 3,900 | 3,560 | 3,278 | 3,041 | 18,014 | 3,603 |
|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(안 제18조제2항) | 135,971 | 140,461 | 145,094 | 149,886 | 154,836 | 726,248 | 145,250 |
| 중앙·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25조) | 8,159 | 8,447 | 8,744 | 9,053 | 9,378 | 43,781 | 8,756 |
|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운영(안 제28조) | 26.2 | 26.2 | 26.2 | 26.2 | 26.2 | 131 | 26.2 |
| 추가재정소요 | 148,461 | 153,134 | 157,424 | 162,243 | 167,581 | 788,844 | 157,769 |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|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2 | 안 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|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3 | 안 제11조(실태조사) |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4 | 안 제14조(조기진단의 실시 등) | 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,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,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<br>(제2항)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・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. 이 경우 국가는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| (제1항) 의무규정<br>(제2항) 재량규정 |
| 5 | 안 제15조(지원신청 등) |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6 | 안 제18조(교육 및 활동・돌봄서비스 지원) | 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・청소년의 나이, 수학능력(修學能力)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학습법 개발, 전문교사 양성, 일반교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<br>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・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<br>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7 | 안 제19조(자립지원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형성과 관리지도, 사회성 훈련 및 경제・법률・문화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8 | 안 제20조(취업 및 고용지원) | 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,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<br>(제2항)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, 직업적성 검사,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| (제1항) 의무규정<br>(제2항) 재량규정 |
| 9 | 안제21조(자녀양육 지원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0 | 안제22조(평생교육 지원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설치,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11 | 안 제23조(의료 지원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련, 심리상담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12 | 안 제24조(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13 | 안 제25조(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) |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・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<br>(제2항) 시・도지사는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・군・구에 설치할 수 있음<br>(제3항) 시・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・군・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・군・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음. 이 경우 시・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<br>(제5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| (제1항) 의무규정<br>(제2항・제3항・제5항) 재량규정 |
| 14 | 안 제27조(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|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15 | 안 제28조(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) |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, 시・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・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 | 의무규정 |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 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| ○ | ○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|
| 2 | 안 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| × | ○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|
| 3 | 안 제11조(실태조사) | ○ | 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|
| 4 | 안 제14조(조기진단의 실시 등) | ○ | ○ 대구·인천·전북교육청의 진단검사비 지원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|
| 5 | 안 제15조(지원신청 등) | ×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6 | 안 제18조(교육 및 활동·돌봄서비스 지원) | △ | ○ (제1항)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○ (제2항·제3항)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|
| 7 | 안 제19조(자립지원) | ×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8 | 안 제20조(취업 및 고용 지원) | × | |
| 9 | 안 제21조(자녀양육 지원) | × | |
| 10 | 안 제22조(평생교육 지원) | × | |
| 11 | 안 제23조(의료 지원) | × | |
| 12 | 안 제24조(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) | × | |
| 13 | 안 제25조(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) | ○ | ○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| 14 | 안 제27조(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| ×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15 | 안 제28조(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) | ○ | ○ 교육부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의 시·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안 제15조·제19조~제24조·제27조 등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

○ (안 제15조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안 제14조~제19조의 지원서비스 신청을 한 사람에게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마련할 판정체계의 형태와 지원신청자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

○ (안 제19조~제24조)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, 취업 및 고용, 자녀양육, 평생교육, 의료 등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현재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(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8억 3,800만원, 국고보조율 서울 50%, 그 외 70%)

○ (안 제27조)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안 제21조는 해당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축할 시스템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❑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○ 참고로, 경계선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「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(DSM)」 제4판 기준 지능지수(IQ)가 70 초과 85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며, IQ의 정규분포에 따라 인구의 13.59%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됨

○ 그러나 제정안이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자 수를 일괄적으로 인구의 13.59%로 설정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므로, 기존 유사사업의 지원 규모 등을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신규 사업의 대상자 수를 가정함

❑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 가. 기본계획 수립(안 제8조)

❑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기본경비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

❑ 교육부의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○ 교육부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5년 주기로 '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'을 수립하고 있음

- 제6차 계획(2023~2027) 수립을 위하여 2021년 「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」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행함(연구용역비로 약 7천만원 소요)

○ 본 추계서는 교육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❑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첫 해인 2026에만 7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2]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 | 70 | - | - | - | - | 70 | 14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나. 실태조사 실시(안 제11조)

❑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2024년 보건복지부는「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」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, 동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○ 「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」연구용역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실시하였고, 소요 예산은 3억원

○ 2024년에 제정안이 명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3년 후인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추계 기간 연구용역 단가(3억원)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❑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억원(연평균 1억 2천만원)으로 추계

[표 3]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8조) | - | 300 | - | - | 300 | 600 | 12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진단검사비 지원(안 제14조)

❑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대구광역시교육청, 인천광역시교육청,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○ 2025년 예산서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,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단검사비를,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

○ 본 추계서는 매년 시·도별 6~11세 인구[1]의 1%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에 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참고로,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5년 지원인원(각각 300명, 500명)은 각각 지역별 만 6~11세 인구 대비 0.3% 수준이며,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지원인원(50명)은 해당 지역 만 6~11세 인구 대비 0.1% 수준
- 지원 인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(2023.12. 공표통계)를 활용하여 산출
- 지원 단가는 1인당 20만원이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
-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지원 대상과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[2]

❑ 추계결과,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0억 1,400만원(연평균 36억 300만원)으로 추계

1) 제정안은 진단검사의 대상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, 기존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인구의 1%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, 6~11세 인구를 활용
2) 본 추계서는 시·도교육청 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, 대구·인천·전북 외의 지역에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수 있고, 그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4] 경계선지능 진단검사비 지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구 분 |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(A) | | 4,407 | 4,072 | 3,732 | 3,450 | 3,213 | 18,874 | 3,775 |
| | 대상자 수 | 22,035 | 20,360 | 18,659 | 17,250 | 16,067 | - | - |
| | 지원 단가 | 0.20 | 0.20 | 0.20 | 0.20 | 0.20 | - | - |
| 기존 사업의 총 재정소요(B) | | 172 | 172 | 172 | 172 | 172 | 860 | 172 |
| 추가재정소요(A－B) | | 4,235 | 3,900 | 3,560 | 3,278 | 3,041 | 18,014 | 3,603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라.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(안 제18조제2항)

❑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○ 보건복지부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,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가정[3)]

-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(평균 국고보조율 67%)으로 추진되고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음

○ (대상자 수)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서상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(1만명)만큼 매년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

- 참고로, 인구의 약 13.59%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6~18세 장래추계인구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경계선지능학생 수를 산출해 보면 추계기간의 연도별 경계선지능학생 수는 62~76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나, 현행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가 1만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사업 확대는 불

3) 강원도의 경우 시·군별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어 경계선지능인, 난독증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방과후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와 별도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사업 대상자 규모를 기존 사업과 동일한 1만명으로 가정(추계기간 대상자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)

○ (지원 단가 및 시간 등) 2025년 예산서상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(16,620원)와 지원 시간(66시간), 지원 개월 수(12개월)를 기준으로 추계[4)]

- 추계기간 지원 단가는 2023~2025년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(3.3%)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- 2023~2025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지원 개월 수가 각각 66시간과 12개월로 유지되었으므로, 추계기간 동 수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❑ 추계결과,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,262억 4,800만원(연평균 1,452억 5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5] 경계선지능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(안 제14조제2항) | 135,971 | 140,461 | 145,094 | 149,886 | 154,836 | 726,248 | 145,25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마. 중앙·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25조)

❑ 제정안에 따라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(이하 '중앙센터')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(이하 '지역센터')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❑ 보건복지부의 중앙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례와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·운영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○ (중앙센터 수) 중앙센터는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4)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 편성 시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산액에 집행계수 65%를 추가 적용하여 최종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집행계수를 고려하지 않음

○ (중앙센터 지원 단가) 보건복지부의 중앙발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예산을 참고하여, 2025년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2023~2025년 예산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(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산출)

[표 3]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| 구 분 | 2023 | 2024 | 2025 | 연평균 증가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건비 | 478 | 490 | 505 | 2.8 |
| 운영비 | 410 | 410 | 410 | 0.0 |

주: 2025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'최중증 종사자 교육 운영지원비(400백만원)'는 제외
자료: 보건복지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○ (지역센터 수) 지역센터는 16개 광역 시·도에 지역당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- 서울시는 현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·도에 추가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[5)]

○ (지역센터 지원 단가) 서울시의 2025년 예산서상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예산(12억 5,800만원[6)])을 기준으로 설정하고, 2025년 지역별 경계선지능인 수 추정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지원 단가를 산출

- 지역별 인구 대비 경계선지능인 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실제 경계선지능인의 지역별 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비율 추정치인 13.59%를 일괄 적용
- 다만, 시설임차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지역별 임대 여부 및 시설 위치,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
-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 지원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[7)]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
5) 강원도의 경우 시·군별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어 경계선지능인, 난독증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방과후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강원도에도 별도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정
6) 시설임차료 제외
7)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(2024.10.11. 경제전망 기준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명목임금상승률(%) | 3.9 | 3.8 | 3.8 | 3.8 | 3.8 |

[표 5]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운영비 단가 추정(2025년)

(단위: 천명, %, 백만원)

| 구 분 | 경계선지능인 수 추정치 | 서울특별시 기준 분포 |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운영비 추정 |
|---|---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1,269 | 100.0 | (기준금액) 1,258[1)] |
| 부산광역시 | 440 | 34.7 | 436 |
| 대구광역시 | 317 | 25.0 | 314 |
| 인천광역시 | 416 | 32.7 | 412 |
| 광주광역시 | 197 | 15.5 | 195 |
| 대전광역시 | 199 | 15.7 | 197 |
| 울산광역시 | 149 | 11.7 | 147 |
| 세종특별자치시 | 54 | 4.3 | 54 |
| 경기도 | 1,896 | 149.3 | 1,879 |
| 강원특별자치도 | 206 | 16.2 | 204 |
| 충청북도 | 222 | 17.5 | 220 |
| 충청남도 | 303 | 23.9 | 300 |
| 전북특별자치도 | 237 | 18.7 | 235 |
| 전라남도 | 237 | 18.7 | 235 |
| 경상북도 | 351 | 27.7 | 348 |
| 경상남도 | 439 | 34.6 | 435 |
| 제주특별자치도 | 92 | 7.2 | 91 |

주: 1) 시설임차료 제외

자료: 서울특별시 2025년도 예산서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·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❑ 추계결과, 중앙·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37억 8,100만원(연평균 87억 5,600만원)으로 추계

[표 6] 중앙·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| 929 | 944 | 958 | 974 | 989 | 4,794 | 959 |
|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| 7,230 | 7,503 | 7,786 | 8,079 | 8,389 | 38,987 | 7,797 |
| 추가재정소요 합계 | 8,159 | 8,447 | 8,744 | 9,053 | 9,378 | 43,781 | 8,756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바.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운영(안 제28조)

❑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,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회를 각각 두어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본 추계서는 중앙 및 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○ 제정안은 해당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시·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원 수 등을 알 수 없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"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"와 "시·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"의 회원 구성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 등을 참고하여 추계

- 현재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,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

○ (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비 추계) 해당 위원회에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,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[8]씩 지급하며,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- 2024년 9월 기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5명이고, 그중 6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, 2024년 한 해 2회의 회의를 개최

○ (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운영비 추계) 시·도별 해당 위원회에 각각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,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10만원[9]씩 지급하며,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- 현재 교육감 소속의 시·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지역별로 8~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그중 2~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됨
- 교육감 소속의 시·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청 본청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8)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, 이를 준용

9)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준용

❑ 추계결과, 중앙 및 시·도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0년까지 1억 3,100만원(연평균 2,620만원)으로 추계

[표 7]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, 명, 회, 개소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앙위원회 운영 비용(A) | 2.4 | 2.4 | 2.4 | 2.4 | 2.4 | 12.0 | 2.4 |
| 회의수당 단가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- | - |
| 인원 수 | 6 | 6 | 6 | 6 | 6 | - | - |
| 회의개최 횟수(C) | 2 | 2 | 2 | 2 | 2 | - | - |
| 시·도위원회 운영 비용(B) | 23.8 | 23.8 | 23.8 | 23.8 | 23.8 | 119.0 | 23.8 |
| 회의수당 단가 | 0.1 | 0.1 | 0.1 | 0.1 | 0.1 | - | - |
| 인원 수 | 7 | 7 | 7 | 7 | 7 | - | - |
| 회의개최 횟수 | 2 | 2 | 2 | 2 | 2 | - | - |
| 시·도 수 | 17 | 17 | 17 | 17 | 17 | - | - |
| 추가재정소요(A + B) | 26.2 | 26.2 | 26.2 | 26.2 | 26.2 | 131.0 | 26.2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 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○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❑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 Ⅴ. 작성자

## 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진우 |

## 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assembly.go.kr |